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599,428,776	47,982,863
일반회계	1,301,968,412	39,059,052
특별회계	297,460,364	8,923,811
공기업특별회계	210,250,134	6,307,50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558,605	46,75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5,230,309	3,156,90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3,461,220	3,103,837
기타특별회계	87,210,230	2,616,307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5,269,654	158,090
수질개선특별회계	10,047,485	301,425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3,173,725	395,212
기반시설특별회계	407,051	12,212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121,389	3,64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229,120	66,87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383,813	191,514
주택사업특별회계	102,765	3,083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6,305,984	1,389,180
지하수특별회계	3,169,244	95,077

제 2 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다.

제 3 조 201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6,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390,307천원으로 한다.